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신설〉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31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8일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신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5%에서 2억원 이하의 정액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 ----- ----- ----- ----- ----- ----- ----- <u>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u> ----- ----- ----- ----- ----- -----.
1. ~ 3. (생략)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재활용원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는 ①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동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한 과징금 총액은 2024년 기준 재활용업체 20억 7,500만원, 소각업체 1억 4,000만원, 매립업체 8,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징수된 사례는 2023년 재활용업체에 부과된 5억 4,800만원의 과징금임.

1) 「폐기물관리법」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과징금 부과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매립업체	소각업체	재활용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21	부과업체수	2개소	2개소	94개소	16개소
	과징금총액	570	29	2,529	238
	최대부과액	390	19	217	20
‘22	부과업체수	1개소	3개소	76개소	17개소
	과징금총액	169	161	2,585	250
	최대부과액	169	100	207	25
‘23	부과업체수	-	-	105개소	10개소
	과징금총액	-	-	4,156	164
	최대부과액	-	-	548	44
‘24	부과업체수	1개소	1개소	95개소	11개소
	과징금총액	82	140	2,075	422
	최대부과액	82	140	124	150

자료 : 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련 업체의 지적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 원의 상한액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취지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련 업계는 유사한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

한액이 2억원으로 한정된 것에 비하여, 「폐기물처리법」상 소각·매립 업체의 과징금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현 상황의 형평성 결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

예컨대 폐기물의 적정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여 과징금 대상이 되어 매출액의 2%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매출액이 동일하게 200억원인 폐기물처리업자의 과징금은 4억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는 2억원임.

[과징금 부과 예시]

구분	위반행위	관련법령	행정처분 (과징금)	매출액	과징금 부과액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	영업정지 1개월	200억원	4억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곳으로 운반한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업정지 1개월	200억원	2억원

참고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연혁을 살펴보면, 당초 두 업종간 영업정지 같은 과징금은 정액(최대 1억원)으로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9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하

2) 참고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23년 기준 1조 6,296억 원이며 소각업체는 5,108억 원, 매립업체는 3,879억 원임. 또한, 이들 3개 분야의 상위 20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218억 원, 소각업체는 161억 원, 매립업체는 193억 원임. 3개 분야 최대 기업의 매출액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인선이엔티(주)는 1,253억 원이며, 소각업체인 (주)코엔텍은 258억 원, 매립업체인 (주)제이엔텍은 653억 원임.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및 폐기물업체 매출액 비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소각업체	매립업체
전체 매출액	1조 6,296억원	5,108억원	3,879억원
상위 20개 업체 평균 매출액	218억원	161억원	193억원
최대 기업 매출액	1,253억원	258억원	653억원

자료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여 과징금 수준을 기존 1억원에서 매출액의 5%로 상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³⁾되어 2020년부터 시행됨.

이후 2023년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설정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⁴⁾되어, 두 업종 간 상한액 차이가 발생하게 됨.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상한액을 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안에는 상한액이 설정되어있지 않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한액 2억원이 설정되었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요약)]

제397회 국회 법제사법제5차 (2022.5.26.)	(대체토론)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같은 위반 행위더라도 업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제400회 국회 법제사법소위제1차 (2022.12.1.)	(환경부 조정안) 업계와 협의를 통해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하되, 최대 2억 원의 상한 설정 (대체토론) 업계의 정확한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상한액 설정시 영세 업체를 제외한 대형 건설폐기물 업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음
제403회 국회 법제사법소위제1차 (2023.2.22.)	(대체토론)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물가 상승·건설폐기물처리업 성장속도를 감안하여 법률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이므로,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023128, 환경노동위원장),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19.10.24.)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20243, 환경노동위원장),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2023.2.27.)

이와 같은 연혁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비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만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의 법제사범소위원회 논의와 같이, 상한액 설정은 대형 업체에 유리한 점이 있고, 물가 상승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매출액 성장 추세를 고려할 때 법률에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과징금의 부담 이익 환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한액 설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환경부는 효율적인 제재의 적정 수준과 매출액이 큰 업체의 경우 과징금 부과 액수가 현행보다 낮아질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의 정액 한도에 대해 매출액 및 환경영향수준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합리적인 상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6